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등 세상을 열어가는

사단법인 대전여민회

수신자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외 926곳

(경유) 한부모사업담당자

제 목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여민회는 대전지역의 여성이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교육, 상담, 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3. 본 회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하여 <2016년도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건강권지원사업을 통하여 많은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접수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비 및 검사결과에 따른 재·정밀 검진비,수술치료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3. 신청기간 : 2016년 3월10일(목) ~ 4월 1일(금)
4. 신청대상 :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 붙임 1.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건강권지원사업 신청과 진행 절차시 필요한 Q & A 끝.

사 단 법 인 대 전 여 민 회 공 동 대 표 장 현 선 • 채 계 순



수신자

담당자

김 세 영

사무국장

김 수 미

공동대표

장 현 선·채 계 순

협조자

시행 여민-2016-14

접수

우 34812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 <http://www.tjwomen.or.kr>

전화 042-242-3534

전송 042-257-9790

/

tjwomen2011@hanmail.net

/ 공개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이 사업은 당신의햇살기금,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으로 지원되며, 대전여민회와의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5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 2) 부양가족이 있으며
 -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제외)
 -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지원내용

- 1) 지원인원 : 총 200명
-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1인당)	지원대상	비 고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 및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 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간병비 : 보호자 간병이 불가능한 경우 입원 첫날부터 전액 지원 ※ 치료비, 통원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포함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 재·정밀검진비, 수술·치료비의 경우 검사 전 대전여민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1) 접수방법 : 기관명의로 온라인·우편 동시 접수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2) 접수기간 : 3월 10일(목) ~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3) 제출서류 (1,2번의 경우 온라인/우편 동시접수, 3~7번은 우편접수만 진행)

- ①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1부
- ②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요약표 1부
- ③ 추천단체 고유번호증 1부
- ④ 추천단체 입금계좌사본 1부
- ⑤ 신청자 개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⑥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①, ②, ⑦번 서류는 아름다운재단과 (사)대전여민회 홈페이지 2016년 사업공지문에서 확인

4) 접수처

- 우편접수 : (34855)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 (사)대전여민회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Tel : 042-242-3534 / Fax : 042-257-9790

- 온라인 접수 : tjwomen2011@hanmail.net

6. 사업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	3월 10일(목) ~ 4월 1일(금)	4월 1일(금) 18시 우편 도착 분까지
최종 선정결과 발표	5월 13일(금)	아름다운재단 및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고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5월 20일(금) (예정)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종합건강검진 진행	5월 21일(수) ~ 8월 19일(금)	
재·정밀검진 진행 (해당자만)	소견 후 ~ 9월 30일(금)	
수술·치료 진행(해당자만)	소견 후 ~ 11월 28일(금)	

7. 심사기준

- 1) 근로연수
- 2) 최근 건강검진 유/무
- 3) 부양가족 수
- 4) 경제적 상황
- 5) 건강상태

8. 신청 시 유의사항

- 1)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9. 문의

- 대전여민회 담당자 : 042-242-3534 / tjwomen2011@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around@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산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건강권지원사업 신청과 진행 절차시 필요한 Q & A

Q. 총 근로 연수가 한 직장에서 총 근무한 연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A. 총 근로 연수란 이직과 상관없이 여성가장이 된 이후의 총 근로한 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 무관합니다(예 :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근무연수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는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부양가족이 실질적으로는 가족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본 사업은 추천기관과 대상자와의 신뢰에 기반 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세부 사유를 담당 실무자가 추천 사유 란에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Q. 기존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기 질환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한됩니다. 본 사업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 사업이므로 특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 질환자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Q. 사업 신청 시 2년 이내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건강 검진을 의미하나요?

A.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 자비를 들이거나 사보험료를 들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도 포함 됩니다. 단,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은 제외됩니다.

Q.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가족 이름으로 발급 받아도 되는지요?

A. 간혹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는 반드시 대상자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정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Q. 추천은 한 기관에서 5명 이상 추천이 안 되나요? 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본 사업이 정한 심사 기준을 고려해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는 판단 하되 꼭 5명 이내로 추천해 주셔야 하며 선정 기준은 사업 안내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추천 사유를 감안 하니 추천 기관은 대상자와의 신뢰에 기반 해서 사유란을 자세히 기입해 주시면 참고 사항이 됩니다.

Q.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직장 의료 보험 대상자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의료보호대상자일 경우 복지급여증명서(기초수급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등)로 대체, 개인이 내는 지역의료보험일 경우 최근 3개월 기간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천기관의 담당실무자가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A. 본회에서 마련한 신청서 양식을 토대로 경제, 가족, 근로형태를 파트별로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은 추천기관과 대상자와의 신뢰에 기반 해서 지원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추천기관 담당실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